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시행 알림

1.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이 개정(법률 제14015호, '16.2.3)되어 '16. 8. 4.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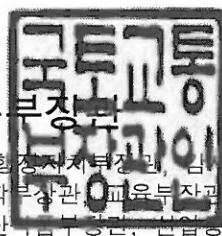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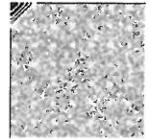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서를 송부하여 드리니 각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동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시고, 귀 소속 및 산하기관(단체)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건설관련단체*에서는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단체 홈페이지(팝업)에 위 제도개요를 금년 말까지 게시(안내)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건설산업정보센터)

붙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안내서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국회사무총장,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조달청장, 행정자치부장관, 법무부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새만금개발청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토교통부인재개발원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항공교통센터장, 한강홍수통제소장,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금강홍수통제소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국토지리정보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SGI서울보증, (재)건설산업정보센터장

주무관

박성민

행정사무관

정병수

과장

전결 2016. 7. 18.

김정희

협조자

시행 건설경제과-4467

(2016. 7. 18.)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513

팩스번호 044-201-5546

/ app3250@molit.go.kr

/ 비공개(5)

꿈꾸세요. 국민행복, 정부3.0이 함께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안내

- (도입배경)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건설기계업자의 피해 예방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
(개정 '16.2.3, 시행 '16.8.4)
- (제도내용) '16.8.4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보증서 교부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확인대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지급보증제도 개요 >

-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법 제34조 관련)
 - (원칙)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예외) 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②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법 제68조의3 관련)
 - (원칙)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함
 - (예외) ①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③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행정사항) 공공 발주자는 위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종합: 시·도, 전문: 시·군·구)에 **행정제재*** 요구

* 시정명령(법 제81조),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법 제82조)